

기본구매계약정서

'강남제비스코㈜(이하 '주문자')와 —————(이하 '공급자')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과 공동번영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구매계약정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다 음 -

제 1 조 계약의 목적

제 1.1 조 '주문자'와 '공급자'는 기본계약 및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구매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품질보증계약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동번영의 정신에 따라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주문자'와 '공급자'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개별계약의 성립

제 2.1 조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주문자'와 '공급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2.2 조. '주문자'는 계약제품, 주문일, 단가, 단위, 주문수량, 공급기일, 공급장소 등이 명시된 주문서(발주서)[이하 '주문서(발주서)'라고 함]를 '공급자'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주문서(발주서)"를 접수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문서(발주서)"의 내용대로 개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2.3 조. "계약제품"이란 제 2.2 조의 '주문서(발주서)'에 의한 주문한 제품, 설비 및 용역 등을 뜻한다.

제 3 조 계약제품의 가격

제 3.1 조 '공급자'가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제품의 단가는 공정거래정신에 바탕을 두고 상호 별도로 합의한다.

제 3.2 조 제 3.1 조에 따른 계약제품의 단가 결정 후, 공급원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단가를 인상 또는 인하 조정할 수 있다.

제 3.3 조 '공급자'는 공급원가를 절감하여 항상 '주문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4 조 주문 및 공급

제 4.1 조 '공급자'는 제 2.2조에 의한 주문(발주)를 접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문자'가 요청한 공급기일 내에 당해 주문수량을 전량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 및 공급가능 수량, 공급 예정일등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주문자'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2 조 '공급자'는 제 4.1 조의 서면 통보 없이 '주문자'의 공급기일에 계약제품의 공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기일 경과 후 매 1일에 대하여 당해 주문수량에 대한 계약제품 대금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주문자'에게 지불한다. '주문자'는 지체상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약제품의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 4.3 조 '공급자'는 특약이 있거나 '주문자'가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공급기일 내에 분할하여 공급을 할 수 없다.

제 4.4 조 '공급자'는 계약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임차 파allet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공급전에 임차 파allet 사용을 '주문자'에게 통보하고, 주기별 임차파allet 종류와 입고자료를 '주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주문자'와 '공급자'는 분기별로 임차파allet 입.출고 수량을 확인하고, '공급자'는 임차파allet 관련 업무진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한다.

제 5 조 인도조건 및 장소

제 5.1 조 '공급자'는 계약제품을 주문서(발주서)에 명시한 공급기일 내에 '공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호 합의하여 정한 공급장소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주문자'에게 품질 불량 및 수량 부족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제 5.2 조 제 5.1 조에 따른 계약제품의 인도 시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운송인은 지참한 송장을 '주문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주문자'가 검수, 확인하는 수량을 최종 공급수량으로 한다.

제 5.3 조 '주문자'는 계약제품을 인수한 경우, '주문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운송인에게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주문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운송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에 수령, 확인함으로써 수령증명서의 교부를 대신 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제품의 검사

제 6.1 조 '공급자'는 '주문자'에게 계약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제품의 인도 시 '공급자'는 '주문자'와 별도로 합의한 양식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2 조 '주문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받은 '계약제품'을 1주일 이내에 검사 완료하여 합격 여부를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단, '주문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불합격품, 수량 부족 및 과납품의 처리

제 7.1 조 '주문자'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계약제품은 '주문자'가 발급한 수령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서 제외되며, '공급자'는 '주문자'의 반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합격품으로 교체, 공급하여야 한다. 단, 반품 및 교체 공급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7.2 조 검사 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공급자'는 '주문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 '공급자'가 '주문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문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반송 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폐기 할 수 있으며, 반송 또는 폐기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7.3 조 '주문자'가 불합격품을 보관하는 동안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실, 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 그 위험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7.4 조 '공급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계약제품"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주문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문자'의 검사상의 명백한 하자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8조 품질보증

제 8.1 조 제 5.1 조에 의하여 계약제품이 '주문자'에게 공급된 후, '공급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불량품을 수리하거나 하자 없는 완전한 계약제품으로 교체하여 공급함은 물론 하자로 인하여 '주문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 8.2 조 '공급자'의 품질보증책임은 '주문자'가 계약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하자보증책임기간을 기재]**년간 존속한다. 다만,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주문자'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공급자'의 보증책임이 연장된다.

제 8.3 조 '공급자'는 '주문자'가 요구하는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및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하여야 한다. 그 세부 사항은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 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와 보관, 품질 개선 대책 수립 및 현장 FEED BACK 등 품질보증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9 조 물품대금지불

제 9.1 조 '공급자'는 제 6 조에 따라 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계약제품의 대금을 '주문자'에게 청구하며, '주문자'는 '주문자'와 '공급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대금지급 기일까지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제 9.2 조 '공급자'의 계약제품의 공급이 빈번한 경우 '공급자'는 월 1회 이상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제조물책임

제 10.1 조 '공급자'가 공급한 계약제품의 결함(물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에서는 '결함'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3자가 제조물 책임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문자'와 '공급자'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주문자'는 제3자의 청구 또는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수행비용, 손해배상금액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책임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2 조 '주문자', '공급자'와 제3자 간에 제조물 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분쟁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불리한 증거나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없다.

제 10.3 조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문자'가 '공급자'에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가입 증권을 '주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단순 유통업자, 단순 판매업자 등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4 조 '주문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주문자'는 그 손해배상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1 조 위험부담

'공급자'가 '주문자'에게 계약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의 위험은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주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2 조 비윤리적 행위의 금지

제 12.1 조 '주문자'와 '공급자'는 이 기본계약의 체결, 이행, 유지에 있어서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비윤리적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된다. '비윤리적 행위'의 예로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다(다만,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 (가)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사회통념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다) 불건전업소, 향응 및 접대를 하는 행위
- (라) 출장 지원, 개인 휴가 지원, 사무실 비품 제공, 협찬/찬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마) 차용/매입/매도,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등 금전 또는 부동산 관련 모든 거래행위
- (바)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의 취득 기회를 제공하거나, 합작투자 또는 '공급자'의 회사에 겸직하도록 하는 행위
- (사) '공급자'의 주식이나 기타 관련 업체의 주식을 제공 또는 투자하도록 하거나 기타 재산을 공동 투자 또는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
- (아) 고용보장, 취업알선의 약속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는 행위

(자) 기타 상대방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 12.2 조 '주문자'와 '공급자'는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

- (가)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윤리적 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열람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나) '공급자'는 '주문자'의 임직원으로부터 제 12.1 조의 각 호의 행위를 제의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주문자'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하여야 한다.
- (다) '공급자'는 '주문자'의 부정비리 퇴직 임직원이 취업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자' 출신 임직원의 채용 시 사전 협의한다.

제 13 조 환경

제 13.1 조 '공급자'는 계약제품에 대한 성분, 화학적 특성, 취급법 등이 기술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등을 포함하여 환경, 보건, 안전에 관련된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2 조 '공급자'는 환경, 보건,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와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보증하며, '공급자'가 제출하는 문서, 데이터, 증빙 자료 등이 정확하고, 완전하며, 사실과 다름 없음을 보증한다.

제 14조 통지의무

'공급자'의 생산계획변경, 기초원재료의 소진 또는 기타 사유로 '공급자'의 생산활동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혹은 '주문자'에 대한 정상적인 공급이 여의치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급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그 내용을 '주문자'에게 서면으로 예고하고, '주문자'가 별도의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 비밀준수

'주문자'와 '공급자'는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기본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6 조 특허보증

'공급자'는 '주문자'가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계약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당할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주문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 17.1 조 '주문자' 또는 '공급자'는 어느 일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 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가)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 (다)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파산 또는 채무자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 (마) 제 12.1 조에서 정한 비윤리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바)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17.2 조 '주문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 이행을 통보하고 15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가) '주문자' 또는 '공급자'가 기본계약, 개별계약 및 부수협정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나) 공급된 계약제품의 품질, 규격 등이 기준 내용과 상이하여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다) '공급자'가 계약기간 중 제4조의 공급기일을 2회 이상 지연할 때
- (라) '공급자'가 계약기간 중 제6조의 불합격품이 2회 이상 발생할 때
- (마) '공급자'가 계약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주문자'의 작업에 상당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공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8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일전 30일 이내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 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9 조 권리의무의 양도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이 계약과 개별계약에 의한 어떠한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0 조 합의 관할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주문자"의 본사 소재지 또는 "주문자"가 지정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1 조 특약 사항

제 21.1 조 기본계약은 기본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 21.2 조 기본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주문자'와 '공급자' 간의 권리의무는 기본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와 같이 계약하며,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문자'와 '공급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